

의안
번호

820

【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11. 5. 4(수) ·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1. 5. 9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1. 5.16(월)

2. 제안이유

- 가. 함월운동장 및 십리대밭축구장에 대하여 체육시설에 포함하고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며,
- 나. 또한 조명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십리대밭축구장의 부대시설과 함월운동장을 체육시설로 추가 (안 별표1)
- 나. 함월운동장 중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 마련 (안 별표2)
- 다. 십리대밭축구장 및 함월운동장의 세부시설 사용료 신설 (안 별표3)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, 제139조
- 나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5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2011. 3. 21. ~ 4. 10.(의견없음)

6.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7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새로 조성되는 함월운동장 및 십리대밭축구장을 중구 체육시설에 포함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, 함월운동장의 부대시설도 사용료 부과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- 주요 개정 내용은
 - 함월운동장의 체육시설 사용료 및 부과 기준을 기존 십리대밭축구장의 사용료 및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,
 - 부대시설인 조명시설 사용료는 2시간 기준 20,000원, 전기시설 사용료는 2시간 기준 10,000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러한 함월운동장의 조명 및 전기시설 사용료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부과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나,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됨.

지방자치법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**질서위반행위규제법**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4.1>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·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[별표 1]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(제2조의2 관련)				[별표 1]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(제2조의2 관련)			
시설명	소재지	주요시설	비고	시설명	소재지	주요시설	비고
원 학 정	<u>울산광역시 중구 성동1길 15-15</u>	국공장		원 학 정	<u>성동1길 15-15</u>	사대 및 과녁	
성안생활체육공원	<u>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길 145번지</u>	테니스장, 족구장, 다목적구장		성안생활체육공원	<u>함월1길 145</u>	테니스장, 족구장, 농구장, 화장실, 관리실 등	
태화십리대발축구장	<u>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800번지</u>	인조잔디축구장		십리대발축구장	<u>태화동 800번지</u>	인조잔디축구장 및 부대시설	
유곡테니스장	<u>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891번지</u>	테니스장		유곡테니스장	<u>다전로 385-1</u>	테니스장, 화장실, 관리실 등	
				함월운동장	<u>성안동 925번지</u>	인조잔디축구장, 야외공연장, 화장실, 관리실 등	

현행					개정안				
[별표 2] 체육시설 전용사용료(제7조제1항 관련) (단위 : 원)					[별표 2] 체육시설 전용사용료(제7조제1항 관련) (단위 : 원)				
구분	기준	평일	토·일·공 휴일	비고	구분	기준	평일	토·일·공 휴일	비고
테니스장	코트당	5,000		3시간 기준	테니스장	코트당	5,000		3시간 기준
	월회원	10,000		1인 기준 (야간조명포함)		월회원	10,000		1인 기준 (야간조명포함)
태화십리대발 축구장	체육경기	25,000 (35,000)	40,000 (50,000)	2시간 기준	십리대발축구장 및 함월운동장	체육경기	25,000 (35,000)	40,000 (50,000)	2시간 기준
	체육경기 외	50,000	80,000	2시간 기준		체육경기 외	50,000	80,000	2시간 기준
1. 괄호안의 요금은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(단체포함) 사용시 요금임 2. 월회원의 코트 사용은 공휴일을 포함한 월중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, 예약 행사 및 대회는 우선 사용한다.					1. 괄호안의 요금은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(단체포함) 사용시 요금임 2. 월회원의 코트 사용은 공휴일을 포함한 월중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, 예약 행사 및 대회는 우선 사용한다.				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3] 부대시설 사용료(제7조제1항 관련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세부시설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사용료</th> <th style="width: 55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테니스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명시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종목별 코트당 1회(3시간 이내) <u>기준</u> <u>사용료임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세부시설	사용료	비 고	테니스장	조명시설	5,000	종목별 코트당 1회(3시간 이내) <u>기준</u> <u>사용료임</u>	<p>[별표 3] 부대시설 사용료(제7조제1항 관련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세부시설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사용료</th> <th style="width: 55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테니스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명시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종목별 코트당 1회(3시간 이내) <u>기준</u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<u>함월운동장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조명시설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20,000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2시간 기준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전기사용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0,000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2시간 기준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세부시설	사용료	비 고	테니스장	조명시설	5,000	종목별 코트당 1회(3시간 이내) <u>기준</u>	<u>함월운동장</u>	<u>조명시설</u>	<u>20,000</u>	<u>2시간 기준</u>	<u>전기사용</u>	<u>10,000</u>	<u>2시간 기준</u>
구 분	세부시설	사용료	비 고																					
테니스장	조명시설	5,000	종목별 코트당 1회(3시간 이내) <u>기준</u> <u>사용료임</u>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세부시설	사용료	비 고																					
테니스장	조명시설	5,000	종목별 코트당 1회(3시간 이내) <u>기준</u>																					
<u>함월운동장</u>	<u>조명시설</u>	<u>20,000</u>	<u>2시간 기준</u>																					
	<u>전기사용</u>	<u>10,000</u>	<u>2시간 기준</u>																					